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1. 12. 2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12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- 2001. 12. 18 :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이유

-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분배소 폐지 및 경보통제소 기능보강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제 확립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의 정원을 조정 재배치하고,

-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 업무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10명 ⇒ 2,413명 (3명 증원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0명 ⇒ 1,403명 (3명 증원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14명 ⇒ 914명 (변동 없음)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 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(변동 없음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민방위 경보시설 분배소 축소(충주·옥천)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에서 사업중단이 많았던 점이 지적되어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위하여

- 민방위 경보통제소 경보요원 2명 보강과
- 투자심사 전담인력 보강 1명을

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행정자치부의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서 민방위 경보시설

축소에 따른 감축되는 인력 1명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 또는 특정 시군에 재배치하여 재난·재해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조치토록 시달되었음에도,

도 경보통제소에 배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410명”을 “2,413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
“1,400명”을 “1,40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10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00명</u></p> <p>2. 내지 4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413명</u></p> <p>1. : <u>1,403명</u></p> <p>2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○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○ 제21조 (정원의 규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
 -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-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- ② - ④ (생략)